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12일, 김종양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2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4.11.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 폐기)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28.)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종양 의원)

경찰청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지역별 교통역량 및 여건
등 안전수준에 대한 객관적 진단 필요성에 따라 교통안전지표를 개발

하여 2023년부터 지역별 교통안전 수준을 조사하고 있음.

현행법에는 경찰청의 교통안전지표 개발·조사·작성·공표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정책 수립 시 교통안전지표 반영에 대한 근거가 없음. 교통안전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현황 파악 및 성과측정의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활용도가 높지 않은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의 교통안전지표 개발·조사·작성 및 공표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교통안전지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서기영 전문위원)

개정안은 경찰청장의 교통안전지표 개발·조사·작성 및 공표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교통안전지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에 개정안은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지표를 개발·조사·작성하도록 하고, 시장등이 교통정책을 수립 시 해당 지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지표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국가 전체의 교통안전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개정안에 따라 교통안전지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사·작성하고, 시장등이 교통안전지표를 활용하여 교통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상 ‘시장등’이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은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3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